

벤처대학원과 외국대학원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공동학위 규정 (개정 2015. 1. 26)

제정 2008. 2.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대학원 학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대학원과 공동학위에 관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이하“교류대학원”이라 한다) 대학원간의 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제2조(용어의 정의) 공동학위라 함은 벤처대학원과 교류대학원(이하 “두 대학원”라 한다)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본 대학의 학위만 수여하거나 두 대학원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거나 두 대학의 공동명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5. 1. 26)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벤처대학원과 외국대학교와의 복수학위에 관한 학술교류협정체결에 의하여 공동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수학하는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 1. 26)

제4조(수업연한 및 신분) ① 수업연한은 석사학위는 2년 4학기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는 3년 6학기 이상으로 한다. 단, 외국대학의 학칙 상 3학기가 가능할 경우 해외 수업 시 적용할 수 있다.
② 공동학위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소속 대학원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자격 및 선발절차) ① 벤처대학원 학칙 제8조(입학지원자격) 및 제9조(지원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5. 1. 26)

② 교류대학원 학생의 지원 자격은 협정에 의하되 벤처대학원의 사정에 따라 선발학과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6)

제6조(선발절차와 인원) ① 두 대학원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해 확정된 공동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 교류대학의 정원 외 재학생으로 인정한다.

② 선발인원은 교류대학교와 협의하여 선발한다.

제7조(등록 및 납입금) ① 공동학위 학생은 두 대학교의 등록절차에 따라 매학기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공동학위 학생의 납입금은 두 대학교간의 협정에 의한다.

제8조(교류학생의 임무) ① 공동학위학생은 교류기간 중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의 이수 또는 학위논문 관련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학과에 제출하고 그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동학위학생은 교류국가의 국제교류에 관한 요건 및 기타 요건, 교류대학교의 학칙 및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입학취소) 학생이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해 입학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는 대학원에 입학취소를 제청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취소를 할 수 있다.

제10조(과정 이수) 공동학위 학생은 두 대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성적처리 및 학점인정) 두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각 대학교 대학원 규정에 따르며, 교류대학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서는 소속대학교에서 이수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12조(졸업요건) ① 공동학위학생은 두 대학교에서 정한 졸업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졸업 관련 사항은 두 대학교의 학칙에 준하여 협정에 의한다.

제13조(학위수여) 두 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한 공동학위과정 대학원생에게는 대학 간 협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류대학교와 상호협조에 따른다.

벤처대학원과 외국대학원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공동학위 규정 1-4-1-5~2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